

I·SEOUL·U

너와 나의 서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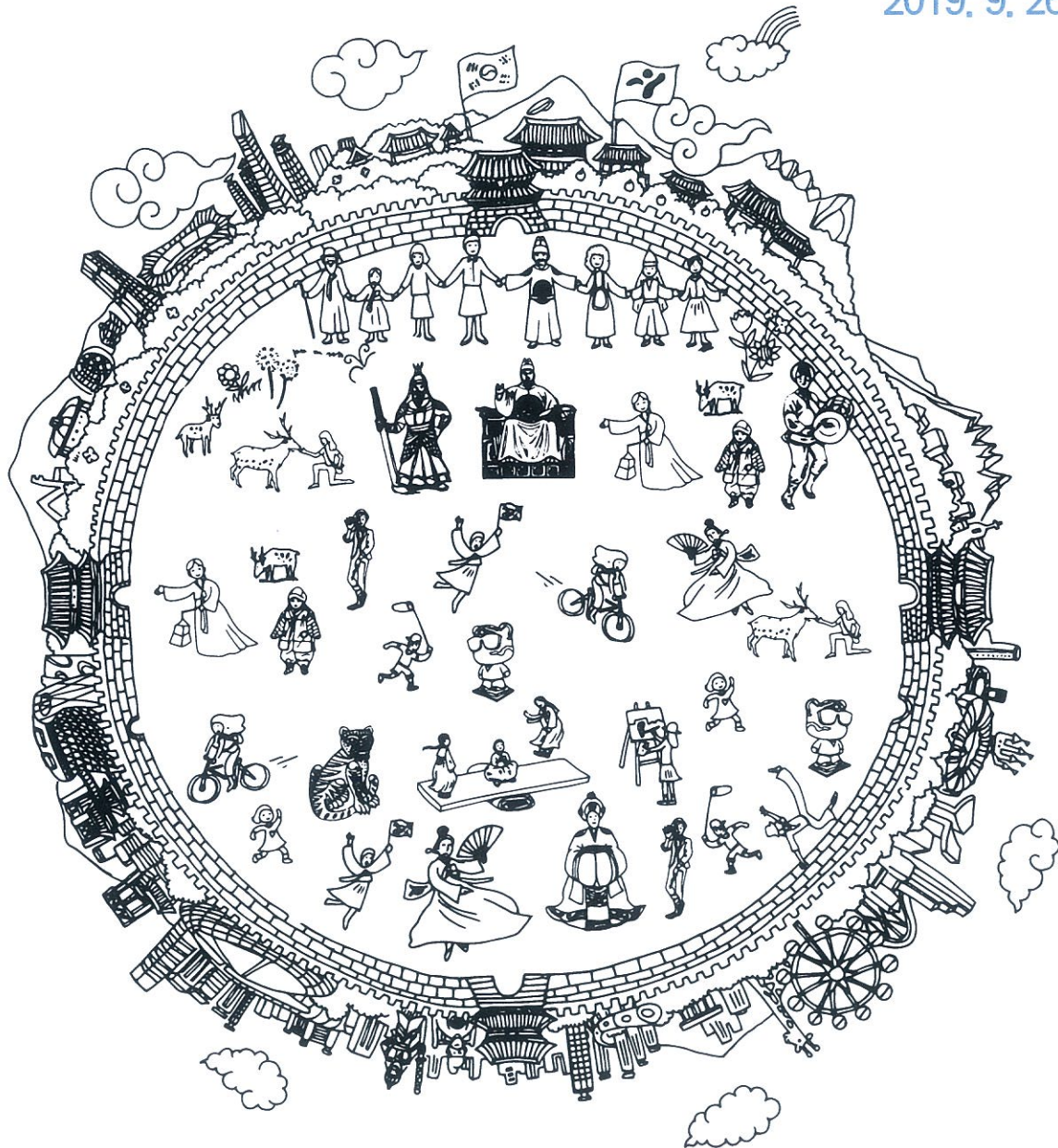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543호

2019. 9. 26.(목)



제68조 앞에 “제12장 보칙”을 삽입한다.

제73조(종전의 제67조)제1항 중 “제66조”를 “제72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48조제1항”을 “영 제48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48조제2항”을 “영 제4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, 등록문화재 정의 규정 정비(제2조)
- 나. 법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정기조사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(제27조)
- 다.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사항(제62조)
- 라. 등록문화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(제63조)
- 마. 등록문화재의 신고에 관한 사항(제64조)
- 바.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규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(제65조)
- 사. 등록문화재의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(제66조)
- 아. 등록문화재에 적용할 준용사항을 규정(제67조)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7289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9월 26일
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다.

제3조(직류운영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시험과목)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서울특별시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(제3조 관련)

직 군	직 렬	직 류	계 급								
		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기술직군	시설관리	기계시설					지방 시설관 리사무 관	지방 시설관 리주사	지방 시설관 리주사보	지방 시설관 리서기	지방 시설관 리서기보
		전기시설									

[별표 2]

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(제4조 관련)

계급	시험과목	직렬 직류	시설관리		
			기계시설	전기시설	
6 급	공개경쟁 임 용	제1차	필수	국어, 한국사, 사회	국어, 한국사, 사회
		제2차	필수	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	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
7 급	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· 전직·승진	제1차	필수	물리	물리
		제2차	필수	기계일반, 기계설계	전기이론, 전기기기
8 급	공개경쟁 임 용	제1차	필수	국어, 한국사	국어, 한국사
		제2차	필수	기계일반	전기이론
9 급	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· 전직·승진	제1차	필수	한국사	한국사
		제2차	필수	기계일반	전기이론

<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,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“기계시설”, “전기시설”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“기계시설”, “전기시설”로 규정함
(제3조 및 별표 1).
- 나.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함
(제4조 및 별표 2).